

해외진출 가이드⑤

세계경제는 다국적·개방화 속에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외에서 기업들이 투쟁의 경쟁에 치열하고 있다. 특히 은 관치인적인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방식에 의해 세계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으며, 일본은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난 196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불, 2010년에는 700억불을 돌파했고, 진출지역도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및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회원사와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 각 기관의 해외진출 서비스 및 제도, 해외진출 시 필수 체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가이드를 게재하고 있다. [편집자주]

내국세 -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가. 세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나.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 공제한도 \Rightarrow 국문중재조항

$$\text{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법인세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의 공제한도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 \times \text{면제} \cdot \text{감면비율})}{\text{법인세과세표준}}$$

-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함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절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으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거나,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로부터 45일 내에 제출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2)397-1443~5, 팩스 (02)720-4105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홈페이지 : www.nts.go.kr

1-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당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가. 공제대상법인

- 다음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
 -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 체결국

- 그리스, 네덜,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방글라데시, 베트남(2014.12.31까지),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2014.12.31까지), 체코, 쿠웨이트, 터키, 태국, 튀니지, 튀니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필리핀, 튀지 등

나.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 상당액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동일

1-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법인세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가.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 자본금의 20%(2010.1.1이후 배당분은 10%)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자회사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 이상인 경우 포함)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액이 포함된 법인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 체결국

- 네덜, 덴마크, 라오스,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영국, 오만, 이스라엘,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18개국)

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 1)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text{①} \quad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text{②} \quad \left(\frac{\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50\%}{\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right) \times \text{수입배당금}$$

※ 종전에는 ①의 방법만 적용하였으나 2008.2. 이후 지급받는 수입 배당분부터 ① 또는 ②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용

1-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에 해외자회사를 두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금 등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가.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의 자본금에 2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이상인 경우 포함)을 직접 출자하고,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6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내국법인

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 1)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50\%$$

-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text{공제대상 범위액} = \left(\begin{array}{l} \text{외국자회사의당해사업연도법인세액} \\ + \\ \text{외국자회사의수입배당금액에대응} \\ \text{하는외국손회사의외국납부세액} \end{array} \right) \frac{\text{수입배당금}}{\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50\%$$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frac{\text{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50\%$$

1-5.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일정금액을 비과세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가.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

나. 비과세급여의 한도

- 월 100만원(단,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다.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계산

- 비과세급여는 월급여액과 한도액(1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비교한 후 적은 금액을 비과세하며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 비과세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하며, 국외근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1-6.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 적용대상자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나.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 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 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다. 정상가격의 정의

-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함

라.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원가등의 분담액조정 명세서, 국제거래 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 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됨
-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부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121조의 2, 제121조의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

가. 제출서식 및 대상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단독 또는 공동 투자한 거주자(내국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
 - 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대상임
- 해외지사 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 이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국(영)문 서식은 국세청 국(영)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 국문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관련서식 → 기타서식
 - 영문 ⇨ Resources → Tax Law/Treaty → NTS Notice

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법제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시행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피투자법인의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해외지사 명세서) 등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인세법 제121의3)
 - ▶ 위 개정규정은 2010.1.1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